< 자동차보험 상품 요약서 >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반드시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자동차보험의 종류 및 가입대상

	구 분	가입대상			
개 인 용 君	KB개인용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법정승차정원 10인이하)			
	KB다이렉트개인용	개인도뉴 자기중중중자(합성중자정된 10인역하) 단,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대표 소유의 자			
	KB다이렉트(인터넷)개인용	동차로서 운전교습도로주행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 는 제외			
	KB다이렉트(플랫폼)개인용	' 는 세외 			
업무용君	KB업무용				
	KB다이렉트업무용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 차.			
	KB다이렉트(인터넷)업무용	(7).			
	KBAce업무용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 차 중 개인소유 자동차			
	KB뉴비즈니스자동차보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 차 중 법인소유 자동차			
영	KB영업용자동차보험				
업 용	KB다이렉트영업용자동차보험	모든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君	KB다이렉트(인터넷)영업용자동차보험				
०]	KB이륜자동차보험				
륜 차 君	KB다이렉트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KB다이렉트(인터넷)이륜자동차보험				
	기타	KB운전자보험, KB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등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① 대상: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또는 기존 가입기간 동안 사고를 여러 번 야기하여 보험 회사가 인수를 거절한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취지: 인수거절된 가입자에게 종합보험 가입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무보험 자동차 양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및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 니다.

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 사항

□ 의무보험 관련사항

① 정의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의거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을 의미합니다.

② 보상한도

구	분	2005.2.22.~2016.3.31	2016.4.1.	
'	Ľ	중의 사고	이후의 사고	
	사망	최고 1억원	최고 1억 5,000만원	
대인 I	부상	최고 2,000만원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원	최고 1억 5,000만원	
대 물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③ 특 징

- 강제보험성: 자배법에 근거한 강제보험,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반면 보험회사에게도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계 약인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 제한(의무보험의 경우는 계약자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단,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의 말소등록(이륜차는 사용폐지)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중복계약의 경우 등

ㅇ 유한보상제

- 대인배상 : 보험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액이며, 1사고당 한도 는 없습니다.
- 대물배상 : 보험가입금액은 1사고당 한도입니다.

ㅇ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인정

피보험자에게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보험회사 에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자배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보유불명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시 대인배상 I 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 는 경우, 다음의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인배상 I: 한도 내 지급보험금

- 대인배상Ⅱ: 1사고당 1억원

- 대물배상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한 도 내 지급보험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④ 의무보험 가입대상 자동차

-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자배법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
 - * 덤프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적재식 아스 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 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

⑤ 의무보험 미가입시 제재

ㅇ 미가입시 과태료

의무보험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미가입기간	대인 I	대물	대인 I	대물	대인 I	대물
10일이내	10,000원	5,000원	30,000원	5,000원	6,000원	3,000원
매1일 초과	4,000원	2,000원	8,000원	2,000원	1,200원	600원
최고한도	60만원	30만원	10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자배법 시행령 [별표 5]

ㅇ 미가입운행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담보내용

① 대인배상 I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자배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② 대인배상Ⅱ

ㅇ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I 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구 분	내 용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사망, 부상, 후유장애
비 용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 권리보전과 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기 타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배상금

- 보상한도 : 피해자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 특징 : 대인 I 의 초과손해 보상

③ 대물배상

ㅇ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오손하여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생긴 피해자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구 분	내 용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직접손해: 수리비용, 교환가액간접손해: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비용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 권리보전과 행사용, 긴급조치비용,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기타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배상금

○ 보상한도 : 1사고당 1천만원/2천만원 (2016.4.1일 이후 2천만원이상 가입의무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약으로 가입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

④ 자기신체사고

ㅇ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사망, 부상,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ㅇ 보상한도

구 분		사망/부상/후유장애		
	자기신체 사고	1,500만원/1,500만원/1,500만원		
		3,000만원/1,500만원/3,000만원		
		5,000만원/1,500만원/5,000만원		
피보험자		1억원/1,500만원/1억원		
1인당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억원/1,000만원/1억원		
보험가입		2억원/2,000만원/2억원		
금액		3억원/2,000만원/3억원		
		5억원/5,000만원/5억원		
		7억원/1억원/7억원		
		10억원/1억원/10억원		

*부상가입금액 확장 특약으로 부상가입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

⑤ 자기차량손해

ㅇ 보상범위

피보험자동차에 타인자동차와의 충돌에 의한 손해와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중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 단, 타인 자동차의 차량 등록번호와 운전자(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만 한합니다.
- *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약으로 접촉, 추락, 전복, 화재, 폭발, 낙뢰, 차량의 침수 등에 의한 손해까지 확장할 수 있음
- ㅇ 보상한도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 자기부담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 자기부담금과 최대 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
- ⑥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ㅇ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피보험자 1인당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가입조건 : 대인배상 I ,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 하여 적용
- 특 징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가입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 약관」이 자동 적용

□ 주요 면책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담보종목		주요 면책사항			
대인배상 I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공통적용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제외)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단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			
	대인Ⅱ	-피보험자 또는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임 의 담 보	대물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 (단,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가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손 보상)			
<u>노</u>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다른 피용자			
	자기차량 손해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등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음주·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			

다. 주요 특별약관

보험회사와 개개의 계약자간에 기본계약 내용이외에 별도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을 말하며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약관.

■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개인용·업무용·영업용)

1) 특약의 요지

보험계약자가 납입할 1년간의 보험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함.

2) 유의사항

가)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제 2회 이후의 분납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는 기간으로 분납보험료 납일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마지막날 24시)

→ 납입최고기간 말일까지도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 약이 해지됨.

나) 보상범위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며, 최고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그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는 면책임.

다) 보험계약 부활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지된 후 30일만에 미납입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음.

라) 단기계약 및 대인배상 I (영업용 제외)에 대하여는 보험료 분할납입특약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업무용)

1) 특약의 요지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2) 가족의 범위

가족의 범위

-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②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기명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장인, 장모 / 기명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시부모를 말함.)
- ③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④ 자 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 출생자녀, 사실혼 관계 출생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3) 유의사항

-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계약"으로 변경하여야 함.
-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가족운전자 및 형제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

1) 특약의 요지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가족 및 형제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2) 가족 및 형제의 범위

가족 및 형제의 범위

-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②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기명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장인, 장모 / 기명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시부모를 말함.)
- ③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④ 자 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 출생자녀, 사실혼 관계 출생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⑥ 법률 또는 사실혼관계상 부 또는 모를 같이하는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및 자매

3) 유의사항

-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및 형제 이외의 자가 운전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계약"으로 변경하여야 함
-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업무용)

1) 특약의 요지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2) 배우자의 범위

— 배우자의 범위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3) 유의사항

-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운전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계약"으로 변경하여야 함.
-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

1) 특약의 요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를 포함하여 2인으로 고지하는 경우에 기명피보험자를 포함한 2인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기명피보험자를 제외한 1인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운전자임)

2) 유의사항

-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를 포함하여 2인 이외의 자가 운전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계약"으로 변경하여야 함.
-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

1) 특약의 요지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2) 유의사항

-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 드시 "기본계약"으로 변경하여야 함.
-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가족 및 지정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

1) 특약의 요지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가족, 기명피보험자가 정한 "지정1인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2) 가족 및 지정1인 운전자의 범위

- 가족 및 지정1인 운전자의 범위 -

- 1.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②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기명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장인, 장모 / 기명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시부모를 말함.)
- ③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④ 자 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 출생자녀, 사실혼 관계 출생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2. "지정1인 운전자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기명피보험자가 정한 1인으로서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운전자를 말함.

3) 유의사항

-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지정1인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계약"으로 변경하여야 함.
-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부 및 지정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

1) 특약의 요지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가 정한 "지정1인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2) 배우자 및 지정1인 운전자의 범위

- 배우자 및 지정1인 운전자의 범위

- 1.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함.
- 2. "지정1인 운전자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기명피보험자가 정한 1인으로서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운전자를 말함.

3) 유의사항

-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지정1인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계약"으로 변경하여야 함.

-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부 및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

1) 특약의 요지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2) 배우자 및 자녀의 범위

- 배우자 및 자녀의 범위 ·

- 1.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2.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①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②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③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3) 유의사항

-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운전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계약"으로 변경하여야 함.
-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기명피보험자 및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

1) 특약의 요지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와 자녀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2) 자녀의 범위

- 자녀의 벆위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①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②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③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3) 유의사항

-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와 자녀 이외의 자가 운전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기본계약"으로 변경하여야 함.

-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

1) 특약의 요지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2) 자녀의 범위

- 자녀의 범위 -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①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②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③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3) 유의사항

-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이외의 자가 운전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계약"으로 변경하여야 함.
-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업무용·영업용)

- 1) 특약의 요지
- 해당 연령 미만의 운전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함.

2) 특약의 종류

운전자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 22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 2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 기준이며 업무용 및 영업용은 차종마다 가입이 가능한 특약이 상이함)

3) 연령기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연령(주민등록상의 만 연령을 말함)

4) 유의사항

-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가입 입증책임

: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또는 만22/24/26/28/30/35/43/48세 이상 한정 운전특별약관 가입시 특약내용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운전자의 연령을 이유로 면책할수 없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음.

(단,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유상운송 위험담보특별약관 (개인용·업무용)

1) 특약요지

보통약관에서는 승용차 및 버스의 경우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요금이나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나, 승용 또는 승합차의 경우 이 특약에 가입하면 유상운송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함. 단 6인승 이하 개인 소유 승용차(긴급수송용 제외)의 경우 화물운송 용도 유상운송 중 생긴 사고만 보상함.

- 2) 가입대상 (대인배상 I 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승용 또는 승합차(버스)
- 3) 적용요율

해당 차종 기본보험료의 150% ~ 300%를 적용함.

6인승 이하 개인소유 승용차(긴급수송용 제외)의 경우 139%를 적용함

■ 전차량 일괄계약 자동담보 특별약관 (업무용)

1) 특약의 요지

보험기간 중도에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고 즉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특약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담보되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도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즉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였어도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해지할 수 있음.

2) 가입대상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일괄하여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음.

3) 적용요율

해당 차종 기본보험료의 98%

4) 유의사항

이 특약이 적용된 계약은 자동차의 양도시 보험계약을 양도할 수 없음. 이 특약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업체의 경우 단체할인할증 실적 평가를 위해 보유자코드를 부여받아야 함.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업무용)

1) 특약의 요지

관용자동차에 자동 적용되는 특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때에는 대체 차량에 보험계약이 승계됨.

2) 가입대상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모든 관용자동차

3) 적용요율

자가용 해당 차종의 담보종목별 기본보험료의 50% 적용 (대인배상 I 도 포함)

■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영업용)

1) 특약의 요지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개인택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한 대리 운전자 포함)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2) 가입대상

기명피보험자만이 운전하는 개인택시 및 개별면허화물자동차

3) 유의사항

이 특약에 가입한 계약은 자동차의 양도시 보험계약을 양도할 수 없음에 특히

유의하여야 함.

■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 (개인용·업무용·영업용)

1) 특약의 요지

자동차 양도 이후, 양수인인 이전 등록하는 기간인 15일 동안(무보험상태) 양도인의 추가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담보되는 특약으로 동 기간 중 양수인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양도인이 가입한 의무보험 일시담보특약에 의해 보상함. 단,이 경우 양수인은 반드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2) 유의사항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② 양도된 피보험자동차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③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날 24시 이후 에 발생한 손해

라. 보험료 분석표 예시

KB손해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www.kbinsure.co.kr 『보험가격공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 보험료 산출기초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예정부가보험료)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예정부가율(예정부가보험료)은 예정이익률과 예정사업비 율(예정사업비)로 구성됩니다.

(단위:%)

구	분	손해율	사업비율	이익률
	책임보험	77.0	23.0	0.0
비사업용	임의보험(자차외)	74.4	23.6	2.0
	임의보험(자차)	75.7	22.3	2.0
사업용	책임보험	86.2	13.8	0.0
\ा म <u>ु ८</u>	임의보험	83.2	14.8	2.0

△ 자동차보험료 계산방법 예시

특 가입자특성요율 (우량할인· 적 용 기본 약 (보험가입경력요율 × 특 별 3년간사고 불량 × \times 평가요율 보험료 보험료 요 교통법규 요 율 할증요율) 율 위반경력요율)